아동 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관련대책의 방향

강 은 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 지난 10년간(1999-2008)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인구대비 1.2배(76.7%) 증가

— 전체범죄 발생율: 20.7% 증가

: 1,732,522건(인구10만명당 3660.1건) → 2,189,452건(4419.5)

— 성폭력범죄 발생율: 76.7% 증가

: 8,830건(18.9) → 16,234건(33.4)

○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율은 전체인구 기준 2.5배(150.0%), 아동인구 기준 3.1배(207.3%) 증가

— 478건(인구10만명당 1.0건)(아동인구10만명당 5.5건) → 1,194건(2.5)(16.9)

<표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1999-200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	8,830	10,189	10,495	11,688	12,484	13,968	13,631	15,157	15,386	16,234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8.9	21.7	22.2	24.5	26.1	29.1	28.3	31.4	31.8	33.4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478	561	503	595	645	670	785	961	1,081	1,194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0	1.2	1.1	1.25	1.4	1.4	1.6	2.0	2.2	2.5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5.5	6.5	5.8	7.0	7.7	8.2	10.0	12.6	14.7	16.9

* 자료: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인구통계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함
* 성폭력범죄: 강간 및 강간미수
* 아동은 12세 이하를 말함(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 피해조사상 발생실태

○ 2007년 여성부, [전국 성폭력 피해실태 조사] 결과 다수의 암수범죄가 존재함이 확인됨

— 성폭력범죄 발생율은 공식범죄통계의 약168배.

— (상담소 내담자 중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자 중 신고비율은 7.1%

<표 2> 피해조사결과 나타난 성폭력범죄 피해율, 2007 (한국)

	2007년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	46.7
암수추정 / 공식통계와의 비교(배)	168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전국성폭력피해조사』, 2007
* 성폭력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부강간이 포함됨

□ 선진국과의 발생비 비교: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 발생비(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는 **영국, 독일,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음

— 2008년 기준 영국은 인구10만명당 74.9건, 독일은 69.1건, 한국은 33.4건, 미국은 29.3건, 일본은 6.8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함

— 2008년 기준 영국은 한국보다 2.2배, 독일은 2.1배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음. 한국은 일본보다 4.9배, 미국보다 1.1배 많이 발생함

※ 공식통계상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암수범죄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 독일 등은 신고율이 높은 국가로 해석되고 있음

○ 지난 4년간(2005-2008) 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만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한국은 2005년 인구10만명당 28.3건에서 2008년 33.4건으로 18.0% 증가

— 일본은 20.0%, 영국은 15.1%, 미국은 7.9% 감소

— 독일은 증감을 반복. 3.3% 증가

※ 한국의 성폭력범죄 증가는 신고율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기적인 피해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증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3> 성폭력범죄 발생비(2005-2008)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2005	발생건수	13,631	94,347	47,163	55,230	10,827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28.3	31.8	88.2	66.9	8.5
2006	발생건수	15,157	92,455	43,738	52,231	10,274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31.9	30.9	81.4	63.4	8.0
2007	발생건수	15,386	90,427	41,440	56,281	9,430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31.8	30.0	76.6	68.8	7.4
2008	발생건수	16,234	89,000	40,787	56,784	8,693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33.4	29.3	74.9	69.1	6.8

출처
* 한국 : 대검찰청,『범죄분석』, 2009

* 미국 : FBI, Uniform Crime Report, 2008. 미국 51개주 전체 폭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행)와 재산범죄(주거침입절도, 절도, 차량절도)의 7대 범죄에 한함
* 영국 : England & Wales, Home Office, Police Recorded Crime, 2009
* 독일 : Bundeskriminalamt(BKA), 2008
* 일본 : 犯罪白書, 2009

집계대상 범죄
* 한국 : 강간, 강제추행(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미국 : 강간, 강제추행(단 강간은 여성에 대한 강간만 포함됨)
* 영국 : 통계대상 성폭력범죄는 중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아동대상성범죄)와 기타성범죄(음란행위, 친족간성범죄, 매춘호객행위 등)이며, 이중 중한 성범죄의 발생비에 한함.
* 독일 : 강간, 강제추행
* 일본 : 강간, 강제추행

□ 선진국과의 발생비 비교: 아동성폭력범죄

○ 아동 인구대비 발생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음

— 2008년 기준 독일은 아동인구 10만명당 115.2건, 영국은 101.5건, 미국은 59.4건, 한국은 16.9건, 일본은 6.8건 발생함

—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음. 한국은 일본보다 2.5배 많이 발생함

○ 지난 4년간(2005-2008)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임

— 한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 증가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

— 일본은 29.2%, 영국은 14.8%, 독일은 9.6% 감소

<표 4>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비(2005-2008)

		2005	2006	2007	2008
한국	발생 건수	785	961	1,081	1,194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6	2.0	2.2	2.5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0.0	12.6	14.7	16.9
미국	발생 건수	35,009	36,939	36,431	36,278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1.8	12.4	12.1	11.9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57.7	60.1	59.8	59.4
영국	발생 건수	9,743	9,400	8,835	8,360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8.2	17.5	16.3	15.4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19.1	115.2	108	101.5
독일	발생 건수	13,962	12,765	12,772	12,052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6.9	15.5	15.5	14.7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27.4	118.5	120.5	115.2
일본	발생 건수	1,456	1,082	988	1,007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1	0.9	0.8	0.8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9.6	7.2	6.6	6.8

* 한국 : 12세 이하,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국 : 14세 이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 영국 : 12세 이하, Home Office, Police Recorded Crime
* 독일 : 13세 이하, Bundeskriminalamt(BKA)
* 일본 : 12세 이하, 법무성 내부자료

2.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 관련정책: 가해자 엄벌정책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다양한 재범억제제도 도입

○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 다양한 재범방지제도의 도입 및 강화: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 화학적거세

□ 2010년 관련법 개정 내용

○ 2010년 **형법** 개정안

— 유기징역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경우 50년까지로 상향

—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한 자로 상향조정

○ 2010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

첫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둘째,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제7조). 셋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넷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제20조제1항). 또한 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20조제2항).

다섯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제23조).

여섯째,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제25조).

일곱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여덟째,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제32조 - 제42조).

○ 2010년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첫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제2조제2호다목, 법 제2조제2호라목)

둘째,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제7조의3)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다섯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제13조).

여섯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제14조제1항).

일곱째,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제16조)

여덟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제18조의2 - 제18조의4)

아홉째,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

반할 경우 처벌(제28조의2 -제28조의4 및 제48조제2항)

열째,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열한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 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법 제44조제2항)

○ **전자감시**: 2010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

첫째, 전자발찌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둘째, 성폭력, 미성년자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추가

셋째, 부착기간의 하한을 강화하고 상한은 범죄유형별로 10년에서 30년까지로 대폭 상형 조정

넷째,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부칙 제2조)

○ **화학적 거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1년 7월 실시)

첫째, 약물치료의 적용 대상자: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19세 이상의 사람

둘째,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함. 징역 후에 별도로 집행함(동의요건 없음)

셋째, 징역형 복역 중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임박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별도의 치료명령을 15년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동의요건/본인치료비 부담)

넷째, 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치료위탁시, 보호감호의 가출소시 보호관찰의 범위 안에서 치료감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치료명령 부과(동의요건 없음)

다섯째, 법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명령을 적용

여섯째,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하며, 약물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함. 先 형벌, 後 약물치료의 순으로 집행되며 출소 2개월전부터 치료를 시작함.

□ 선진국과의 법정형 비교

○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의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와 구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비교함

— 대륙법계 형법인 한국, 일본, 독일과 영미법계 형법인 미국, 영국의 법체계적 차이점과 각국 형법상 법정형의 경중체계로 인해 법정형 범위의 단순비교로써 처벌수준의 경중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또한 한국, 미국, 영국은 양형기준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 한국의 경우, 여타 4개 국가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준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태도를 취한 경우라 평가할 수 있음

<표 5>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법정형 비교

범죄유형	법정형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아동청소년 강간	하한 (이상)	10년(13세미만) 5년(19세미만)	-	-	6월	3년
	상한 (이하)		-	무기구금	10년	-
아동성폭행 상해/치상	하한	10년(13세)	-	-	2년	5년
	상한	무기징역(13세)	-	-	-	무기징역
아동성폭행 살인/치사	하한	무기징역(13세)	무기구금	-	10년	-
	상한	사형(13세)	사형	-	무기구금	-
의제강간	하한	3년	-	-	6월	3년
	상한	-	무기구금	14년	10년	-
아동강제 추행	하한	5년 (13세미만) 1년 (19세미만)	-	-	2년	6월
	상한	-	무기구금	14년	-	10년
아동대상 유사성교	하한	7년 (13세미만) 3년 (19세미만)	-	-	2년	6월
	상한	-	무기구금	무기구금	-	10년
성매매·음란물제작목적 아동인신 매매	하한	5년	-	-	-	1년
	상한	-	무기구금	14년	3년 (18세미만)	10년
아동이용 음란물제작	하한	5년	5년	-	3월	-
	상한	-	20년	14년	4년	3년
아동대상 성매수	하한	-	-	-		
	상한	3년	-	무기구금 (13세미만) 14년	3년 (16세미만) 5년	5년 (18세미만)

				(14-15세) 7년 (16-17세)	(18세미만)	

3. 아동성폭력 관련정책 변화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대폭적인 가해자 엄벌정책 도입'**과**'아동성폭력범죄의 급속한 증가'**를 동시에 경험함

○ 현재 우리 사회는 기존의 아동성폭력 관련정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해 내야하는 **전환점**에 서있다고 판단됨

□ 성폭력범죄 대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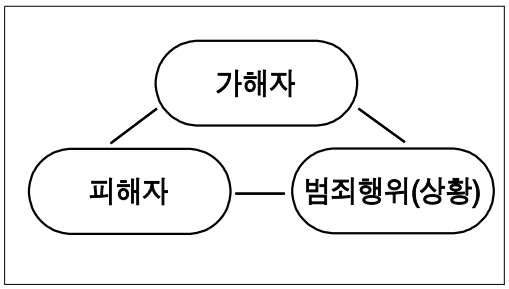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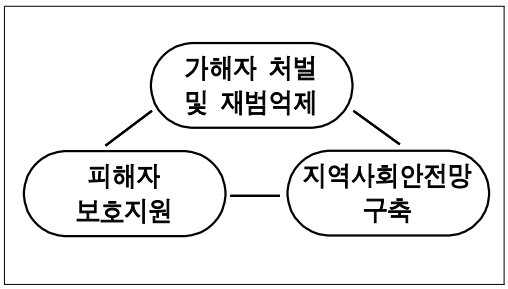

가해자 관련 대책	피해자 관련 대책	예방 관련 대책
수사력 보강 양형 강화(형량,구속수사,집행유예 및가석방불허,감경사유삭제) 가해자 치료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수사재판과정상 피해자보호 의료・수사・법률지원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가족지원 학업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신고제도 아동안전망(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CE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 정책방향 (1): '처벌의 엄격성' 강화에서 '처벌의 확실성' 확보로의 정책 전환

○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이며, 따라서 '처벌의 확실성'

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억제효과가 없음. 따라서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을 통해 유죄입증력을 높여, 유괴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만 가해자 엄벌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하며, 더불어 성폭력범죄조기발견체계, 신고의무제의 강화, 친고죄 폐지 등 역시 필요함

: 168건 중 1건 신고 → (기소율 45%) 373.3건 중 1건 기소 → (유죄판결율 82.8%) 450.9건 중 1건 유죄판결

→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을 통해 유죄입증(**기소율과 유죄판결율 증가**)

→ 유괴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

□ 정책방향 (2): '예방', '지역사회안전망 확보' 정책의 추진

○ 향후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을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은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예방'**에 있어야 함

○ 또한 '잠재적 피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예방 전략에서 **'지역사회단위의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쟁점

— 지역사회내 홀로남은 아동 대책

— 학교 CPTED의 도입

○ 학교 CPTED **(별도의 유인물 참고)**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 CPTED의 원리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

: 1세대 CPTED는 자연감시, 기계적 감시를 강조하였으나 2세대 CPTED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에 강조점을 둠

□ 정책방향 (3): '생물학적 · 심리적 결정론'에서 '사회문화 · 구조적 시각'으로의 전환

○ (2000년대 이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으로 해석하고 **사회의 책임을 외면하는 시각**에서 탈피

○ 모성보호, 음주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위, 아동포르노그래피, 가부장적 문화, 성기중심적 성문화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 회복

○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 범행시 가해자 음주비율은 독일 8.2%, 미국 7.9%로 한국 37.1%와 큰 차이를 보임

— 이같은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후 일탈행위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지며, 따라서 성폭력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6>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시 가해자 음주여부 비교(2008)

		한국	미국	독일
가해자 음주여부	음주 상태	37.1	7.9(9.1)*	8.2
	비음주 상태	62.9	90.9	91.8
	계	100.0	100.0	100.0

* 범행시 가해자 알코올 사용비율은 7.9%, 마약 및 약물사용 비율은 1.2%

□ 정책방향 (4): 기타 쟁점

○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의 전환: **'서비스 전달체계'의 말단부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개선**

○ **incest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

○ **각종 재범방지제도의 정비**

– 적합한 대상자 선별의 문제 및 재범위험성의 판단 기준 문제

– 대상자 등급화를 통한 처우 단계화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 시기의 문제

– 치료 혹은 재사회화 프로그램과의 병행

– 가해자 치료시스템의 정비

– 청소년 가해자 치료확대 및 재범억제 방안 마련

– 화학적 거세법(약물치료)의 문제점 보완

: 성범죄자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를 독자적인 형사제재의 형태로 법제화

: 특유의 성적인 환상과 성취를 동반하는 성도착(paraphiliac)에게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짐

: 강제치료(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음)